

성북구-친환경 쌀 공급업체 『우수 친환경 쌀 공급 협약서』 (안)

성북구청(이하 “기관” 이라 한다.)과 마한농협, 금성농협, 복신안농협, 영광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예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하 “기업” 이라 한다.)은 기관과 기업 협력의 일환으로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교 식재료 개선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기관과 기업이 학교 식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협력 관계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범위] 기관과 기업이 학교에 친환경 쌀 납품과 친환경 식재료 공급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간의 관심과 사회적 책임으로 폭넓은 협력을 유지하는데 동의하며, 본 협약에 의한 각종 사업은 상호협약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 [협력분야] 기관과 기업은 다음 각 호의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상호 노력한다.

1. 성북구 친환경 우수 식재료 발전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
2.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 개선에 대한 공동 노력
3. 식재료 안전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4. 도농교류 및 체험학습에 대한 상호 지원
5. 급식관계자의 모니터 등 신뢰기반활동 상호 지원

제4조 [상호협약] 기관과 기업은 제3조 각 호의 협력분야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아래 각종 제도 및 규정을 존중하며, 협력 사업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한다.

제5조 [실무회의]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내용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관에서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 유치원 등과 기업 간의 계약 및 공급에 관한 제반 사항
2. 제3조의 각 호 협력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

제6조 [기밀유지] 기관 및 기업은 상호교류를 통해 인지한 제반사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협약서의 변경] 본 협약서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사안이 발생할 시 기관과 기업이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서의 해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기업의 사정상 지속적으로 제품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3. 안전성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일상의 작업환경 등 식품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기 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쌍방 (기관·기업 대표자)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본 협약은 기관과 기업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5년 12월 16일

성북구청 교육청소년과장
최 병 재

미헌농업협동조합 대표
박 찬 기

금성농업협동조합 대표
양 용 호

북신안농업협동조합 대표
최 영

영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강 선 중

예산로컬푸드협동조합 대표
김 찬 석



위와 같이 기관과 기업 간 협약사항을 이해하며
원활한 협력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김 영 배

나주시 부시장
이 기 춘

담양군수
최 형 식

신안군 부군수
송 경 일

영광군 부군수
정 근 택

예산군 부군수
조 동 규